# 사업보고서 속 감사 파트

The Audit Section of the Business Report

감사의견 4종 · 감사용역 표 · 논의 결과 · 내부회계 세 겹 · 회계·재무전문가

## 가상의 사례

- **감사계약이 바뀌었다** — 처음 숫자? 바뀐 숫자?
- **내부회계 감사의견** — 한정의견도 쓸 수 있나?
- **회계·재무전문가** — 몇 가지 유형으로 적나?

## 오늘의 좌표

시장 구분: 양쪽(코넥스 제외) · 근거 계열: 자본시장법 · 상법

- **감사의견 표** — 의견 4종과 "해당사항 없음"
- **감사용역 표** — 계약내역 · 실제수행내역
- **논의·내부회계** — 감사위원회와 감사인 · 세 겹의 결론
- **감사위원회** — 회계·재무전문가 칸

사업보고서에 붙는 「감사보고서」는 두 가지
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· 감사의 감사보고서

## 첨부서류의 두 감사보고서

시행령 §168⑥ 1·2호(단서·개정연혁·3호 이하 생략) · 대통령령 제36823호, 시행 2026.11.13

> ⑥ 사업보고서에는 법 제15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… 1.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(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말한다) 2. 감사의 감사보고서(「상법」 제447조의4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말한다) …

## 기재사항 제8호

시행령 §168③ 8호(개정연혁·1~7호·9호 생략) · 대통령령 제36823호, 시행 2026.11.13

> ③ 법 제159조제2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… 8.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…

## 감사의견 표의 칸

작성기준(금감원, 2026.9.30. 시행판) 제5-2-1조①1호 · 작성지침 ii

| 칸 | 무엇을 쓰나 |
|---|---|
| 감사의견 | 네 가지 중 하나 |
| 의견변형사유 | 적정의견 이외일 때 괄호로 요약 |
| 계속기업 불확실성 · 강조사항 | 없으면 "해당사항 없음" |
| 핵심감사사항 | 소제목 모두, 없으면 "해당사항 없음" |

## 감사의견은 네 가지 중 하나

작성기준(금감원, 2026.9.30. 시행판) 제5-2-1조 작성지침 ii가

> 가. 감사의견은 적정의견, 한정의견, 의견거절, 부적정의견 중 하나로 기재한다. 감사의견이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인 경우 괄호로 의견변형사유를 요약 기재(예시: 계속기업 불확실성, 특수관계자 거래 등)한다.

### 핵심감사사항

작성기준(금감원, 2026.9.30. 시행판) 제5-2-1조 작성지침 ii라

> 라. 핵심감사사항은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이 있는 경우 그 소제목을 모두 기재하고(예시: 수익인식의 적정성, 특수관계자 거래 등) **없으면 "해당사항 없음"을 기재한다**.

### 칸을 비운다?

작성기준(금감원, 2026.9.30. 시행판) 제5-2-1조 작성지침 ii나·다·라

- ✕ 계속기업 불확실성·강조사항·핵심감사사항이 없으면 칸을 비운다
- ✓ 작성지침 ii나~라 — **"해당사항 없음"**을 기재한다

### 가상회사 경의 감사계약

| 구분 | 보수(백만원) | 시간 |
|---|---|---|
| 최초 계약 | 300 | 3,000 |
| 사업연도 중 변경 후 | **350** | 3,400 |

### 바뀌었으면 바뀐 숫자

작성기준(금감원, 2026.9.30. 시행판) 제5-2-1조 작성지침 iii가

> 가. 감사계약내역은 용역계약 시점의 감사(검토 포함)보수 총액 및 총 추정 감사(검토 포함)시간을 기재한다. 단, **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** 변경된 수치를 「감사계약내역」에 기재한다.

### 실제수행내역의 기간

작성기준(금감원, 2026.9.30. 시행판) 제5-2-1조 작성지침 iii나

> 나. 실제수행내역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감사(검토 포함)와 관련하여 공시서류작성제출일까지의 실제 감사(검토 포함) 보수 지급금액 및 투입시간을 **누적 기재한다**, 투입시간은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(수습공인회계사 포함)의 현장감사(검토포함)와 감사보고서 작성작업 등에 소요된 총 시간을 기재한다.

### 비감사용역 표 두 개

작성기준(금감원, 2026.9.30. 시행판) 제5-2-1조①3호·4호

- **회계감사인과의 계약** — 제5-2-1조①3호
- **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계약** — 제5-2-1조①4호
- **칸** — 계약체결일 · 용역내용 · 용역수행기간 · 용역보수

### 비감사용역계약이란

작성기준(금감원, 2026.9.30. 시행판) 제5-2-1조 작성지침 v(뒷부분 생략)

> v. 비감사용역계약이라 함은 회계감사인 및 그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수행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(중간감사 포함) 및 검토용역을 제외한 용역계약(회사가 제3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회계감사인 및 그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제3자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등 회계감사인 및 그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**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포함**)을 말하며, …

### 논의 결과 — 고시가 정한 기재사항

증발공 규정 제4-3조①3호하목 ·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-48호, 시행 2026.11.13

> 하.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**감사위원회(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)와 회계감사인이 논의한 결과**

### 논의 결과는 이렇게 적는다

작성기준(금감원, 2026.9.30. 시행판) 제5-2-1조①5호 · 작성지침 vii

| 칸 | 쓰는 법 |
|---|---|
| 기간 |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제출일까지 |
| 순서 | 회의 시간 순서에 따라 |
| 참석자 | 양쪽 주요 참석자의 소속·직위, 총참석인원 |
| 방식 | 대면회의, 서면회의 등 |

### 핵심 포인트 · 슬라이드 17

작성기준(금감원, 2026.9.30. 시행판) 제5-2-1조 작성지침 viii

주요 논의 내용 — 예시 일곱 가지(가~사)

보수·시간 · 범위·시기 · 부정위험 · 유의적 발견사항 · 내부통제 미비점 · 미수정왜곡표시·후속사건 · 의견 변형 가능성

### 회계감사인의 변경

작성기준(금감원, 2026.9.30. 시행판) 제5-2-2조①

> ① 공시대상기간동안 회계감사인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기재한다.

### 변경사유에서 고려할 것

작성기준(금감원, 2026.9.30. 시행판) 제5-2-2조 작성지침 i·ii

- **계약기간** — 계약기간 중인가, 만료인가
- **누구의 의사** — 감사인의 자발적 의사인가, 회사의 의사외의 기타 사유(법규 등)인가
- **증권선물위원회** — 교체사유를 제출했다면 요약

### 내부통제 — 이상 없으면 생략

작성기준(금감원, 2026.9.30. 시행판) 제5-3-1조 · 작성지침 i(ii 생략)

> 제5-3-1조(내부통제)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내부통제의 유효성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기재한다. … i.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상 내부통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한다.

### 내부회계 — 세 겹의 결론

작성기준(금감원, 2026.9.30. 시행판) 제5-3-3조 1~3호

- 경영진 — 운영실태보고서 보고일자 · 평가 결론
- 감사(위원회) — 평가보고서 보고일자 · 평가 결론
- 회계감사인 — 감사의견 또는 검토결론

### 평가결론은 둘 중 하나

작성기준(금감원, 2026.9.30. 시행판) 제5-3-3조 작성지침 ii나(iii나 같은 문언)

> 나. 평가결론은 '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', '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' 중 하나로 기재한다.

### 내부회계 감사의견은 세 가지

작성기준(금감원, 2026.9.30. 시행판) 제5-3-3조 작성지침 iv나

> 나. 감사의견은 적정의견, 부적정의견, 의견거절 중 하나로 기재하며,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전문은 기재하지 않는다.

## 나란히 놓으면

작성기준(금감원, 2026.9.30. 시행판) 제5-2-1조 작성지침 ii가 · 제5-3-3조 작성지침 iv나·라

| 표 | 무엇 중 하나로 쓰나 |
|---|---|
| 재무제표 감사의견 | 적정 · 한정 · 의견거절 · 부적정 (4) |
| 내부회계 감사의견 | 적정 · 부적정 · 의견거절 (3) |
| 내부회계 검토결론 | 검토의견 미변형(표준보고) · 검토범위의 제한(한정 또는 거절) · 중요한취약점의 발견 |

## 한정의견?

작성기준(금감원, 2026.9.30. 시행판) 제5-3-3조 작성지침 iv나

- ✕ 내부회계 감사의견 칸에도 한정의견을 쓴다
- ✓ 작성기준 목록은 **적정의견 · 부적정의견 · 의견거절**

## 구축하지 않았다면

작성기준(금감원, 2026.9.30. 시행판) 제5-3-3조 본문·단서(각 호 생략)

> 제5-3-3조(내부회계관리제도)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. 다만,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**그러한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생략할 수 있다**.

## 감사위원회의 요건

상법 §542의11①② (개정연혁 생략) · 시행일 기준 본문(2026.9.10.)

>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 1. **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** 2.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독립이사일 것

## 어느 상장회사인가

상법 시행령 §37① 본문(단서 각 호 생략) · 대통령령 제36511호

> ① 법 제542조의11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"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**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**를 말한다. 다만, …

## 작성기준의 전문가 유형(택일)

상법 시행령 §37②1~4호 · 작성기준(금감원, 2026.9.30. 시행판) 제7-2-1조 작성지침 i나

| 시행령 §37② | 작성기준 유형 |
|---|---|
| 1호 공인회계사 자격 + 5년 | ① 회계사(1호 유형) |
| 2호 석사 이상 + 연구원·조교수 5년 | ② 회계·재무분야 학위보유자(2호 유형) |
| 3호 상장회사 임원 5년 · 임직원 10년 | ③ 상장회사 회계·재무분야 경력자(3호 유형) |
| 4호 금융기관·한국은행 등 5년 | ④ 금융기관·정부·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(4호 유형) |

## 핵심 포인트 · 슬라이드 30

상법 시행령 §37②5호 · 작성기준(금감원, 2026.9.30. 시행판) 제7-2-1조 작성지침 i나

**5 · 4**

시행령 §37②는 5개 호, 작성기준 택일 목록은 4개 유형

5호: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— 기재 방법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음

## 읽는 사람이 맞춰 볼 점(질문)

작성기준(금감원, 2026.9.30. 시행판)

- 핵심감사사항 소제목 ↔ 첨부된 감사보고서
- 감사계약내역 ↔ 실제수행내역
- 내부회계 세 겹의 결론
- 표만으로 문제라고 단정하지 않는다

## 이번 편에서 뺀 것

| 항목 | 뺀 이유 |
|---|---|
| 별지서식 본체(사업보고서 목차·장 번호) | 원문 미확보 |
| 외부감사법 내부회계관리제도·감사인 선임 조문 | 이번 편에서 열지 않음 |
| 시행령 §37②5호 해당자 기재 방법 | 확인 안 함 |
| 실제 사업보고서 실물 | 이번 편 범위 밖 |

## 오늘 정리

시행령 §168 · 증발공 규정 제4-3조① · 상법 §542의11 · 상법 시행령 §37 · 작성기준(금감원, 2026.9.30. 시행판) 제5장·제7장

- 재무제표 감사의견 4가지 · 내부회계 감사의견 3가지(한정 없음)
- 감사계약내역: 기준일 현재 변경됐으면 변경된 수치
- 없으면 “해당사항 없음” — 계속기업·강조사항·핵심감사사항
- 회계·재무전문가: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요건 · 시행령 5개 호

감사 파트는 법령이 정한 칸을 작성기준이 표로 바꾼 자리
다음: 주주총회와 공시

## 핵심 용어 영문 대응표 (Key Terms)

| 한국어 용어 | English Term |
|---|---|
| 자본시장법 시행령 |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|
|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| Regulation on Securities Issuance and Disclosure |
|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| Corporate Disclosure Form Preparation Standards |
| 상법 | Commercial Act |
| 상법 시행령 |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ercial Act |
| 사업보고서 | business report (annual report) |
| 첨부서류 | attached documents |
| 회계감사인 | external auditor |
| 감사(회사 기관) | statutory auditor (internal) |
| 감사위원회 | audit committee |
| 감사보고서 | audit report |
| 감사의견 | audit opinion |
| 적정의견 | unqualified opinion |
| 한정의견 | qualified opinion |
| 부적정의견 | adverse opinion |
| 의견거절 | disclaimer of opinion |
| 의견변형사유 | basis for modified opinion |
|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| material uncertainty related to going concern |
| 강조사항 | emphasis of matter |
| 핵심감사사항 | key audit matters (KAM) |
| 해당사항 없음 | not applicable |
| 감사용역 체결현황 | audit engagement status |
| 감사계약내역 | contracted audit fees and hours |
| 실제수행내역 | actual audit fees paid and hours |
| 공시서류작성기준일 | reference date of the disclosure document |
| 비감사용역 | non-audit services |
| 네트워크 회계법인 | network firm |
| 내부감사기구 | internal audit body |
| 회계감사인의 변경 | change of external auditor |
| 증권선물위원회 |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(SFC) |
| 내부통제 | internal control |
| 내부회계관리제도 |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(ICFR) |
| 운영실태보고서 | management's report on ICFR operation |
| 평가보고서 | audit committee's ICFR assessment report |
| 검토결론 | review conclusion |
| 중요한 취약점 | material weakness |
| 회계·재무전문가 | accounting or financial expert |
| 독립이사 | independent director |
| 자산총액 | total assets |

## 근거 법령 · 기준서 출처

- **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** 제168조 제3항 제8호 · 제6항 제1호·제2호 (대통령령 제36823호, 시행 2026.11.13)
- **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** 제4-3조 제1항 제3호 하목 (금융위원회고시 제2026-48호, 시행 2026.11.13)
- **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(금융감독원)** 제5-2-1조 제1항 · 작성지침 ii·iii·v·vii·viii · 제5-2-2조 제1항·작성지침 (2026.9.30. 시행판)
- **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(금융감독원)** 제5-3-1조 · 제5-3-3조 · 작성지침 ii·iv · 제7-2-1조 작성지침 i (2026.9.30. 시행판)
- **상법** 제542조의11 제1항·제2항 (시행일 기준 본문(2026.9.10.), §542의11② 개정 2025.7.22)
- **상법 시행령** 제37조 제1항 본문 · 제2항 제1호~제5호 (대통령령 제36511호(공포 2026.7.21.) — 제37조는 이 판 현재 시행 본문(R-113 대조))

공부하며 남기는 일반 학습 자료이며 투자 권유나 법률·세무·회계 자문이 아닙니다.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업무에는 반드시 현행 원문을 확인하세요. · A brand of UIEL Co., Ltd. · AI-generated narration.